

고령화 시대,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

## 공사파트너쉽 구축

2014. 9. 11

보험연구원 강호

# kiri



# Contents

I	우리의 복지현황(사회안전망)	3
II	건강 보장 분야	9
III	소득 보장 분야	17
IV	공사 협력 방안	25



kiri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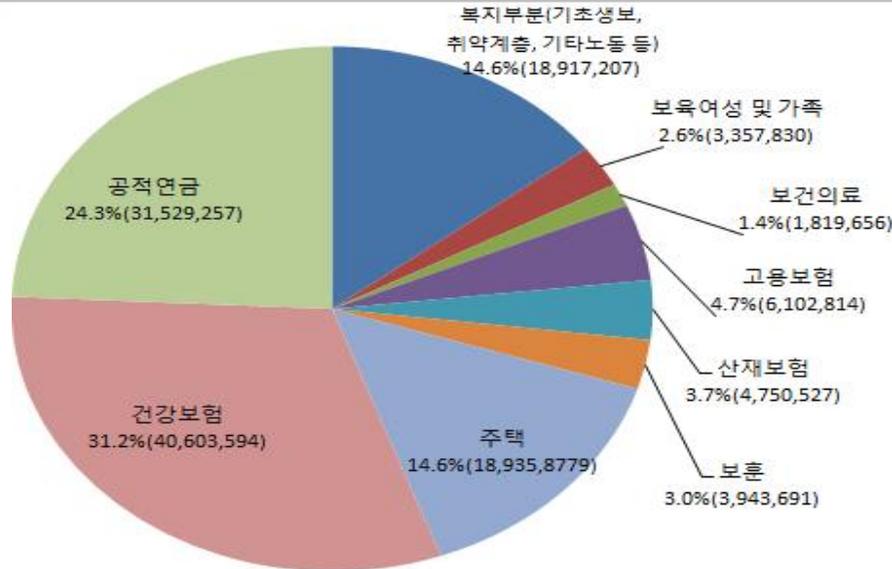
# 우리의 복지현황(사회안전망)



# I. 우리의 복지현황 (사회안전망 수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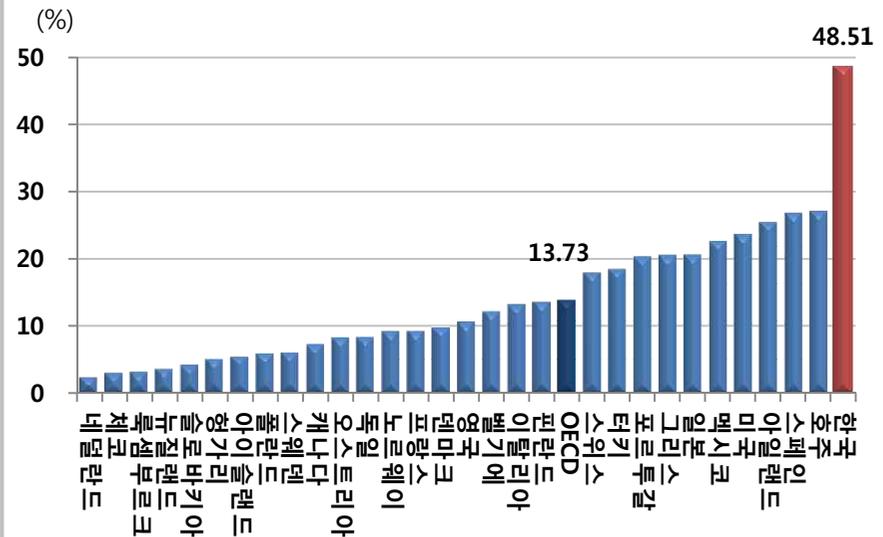
- ❖ **사회안전망으로서의 다양한 복지제도 존재**
  - 사회보험 뿐만아니라, 공공부조, 긴급구호 제도 등 다양
- ❖ **건강보험, 국민연금이 사회안전망으로 중요하나 한계 존재 (노인빈곤)**
  - 건강보험 : 보장율 54.5% (OECD 평균 72.3%)
  - 국민연금 : 낮은 급여수준 [소득대체율 법정 40%, 실제 25~30%]  
[장기요양보험, 기초연금 급여수준 불충분]

### 복지지출 자원배분 현황 (2012)



자료: 최성은(2013), 복지재정과 자원조달

### 노인 빈곤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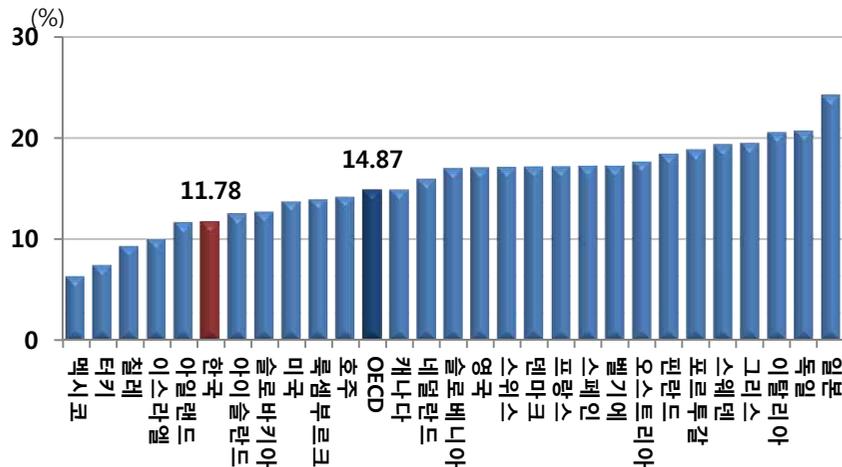
# I. 우리의 복지현황 (고령화 속도)



## ❖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

-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 : 약 12% (2013년) → 20% (2026년)
- 베이비부머(약 720만)의 고령화 : 고령사회→초고령사회 진입 가속 (도달기간: 8년)
- OECD 주요국에 비해 (초)고령사회로의 전환이 급속

###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



주: 캐나다, 핀란드, 일본, 한국, 멕시코, 슬로베니아, 영국, 미국은 2012년, 그 외 국가는 2011년 수치  
 자료: OECD Population

### OECD 국가의 고령화 속도

국가	고령인구(65세 이상)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년도			도달 기간	
	인구의 7%	인구의 14%	인구의 20%	7%-14%	14%-20%
한국	2000	2018	2026	18	8
일본	1970	1994	2006	24	12
독일	1932	1972	2012	40	40
영국	1929	1976	2021	47	45
스웨덴	1887	1972	2012	85	40

# I. 우리의 복지현황 (성장 여력 한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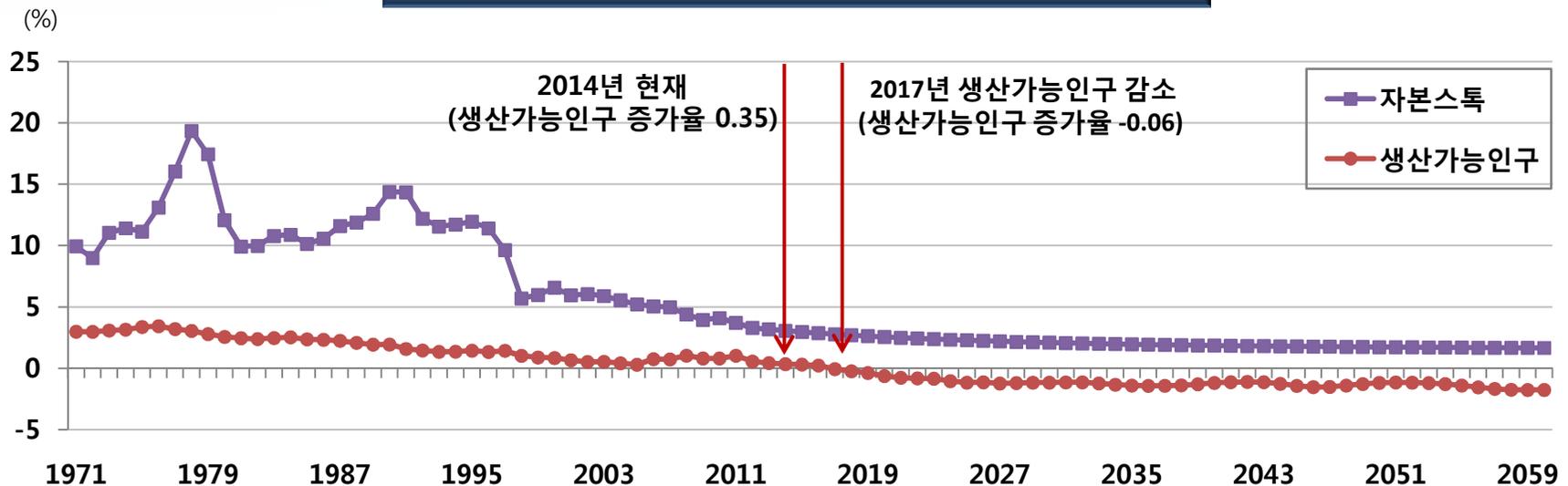
## ❖ 잠재성장률 감소로 복지재원 마련 한계

- 장기적으로 1~2% 수준으로 하락

## ❖ 노동, 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약화

-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[생산가능인구 증가율 : -0.06%]
- 투자부진 장기화로 자본스톡 증가율의 지속적 감소

### 주요 생산요소의 증가율 장기 전망



자료: 이태열·강성호·김유미(2014), 『공·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』

# I. 우리의 복지현황 (재정악화 심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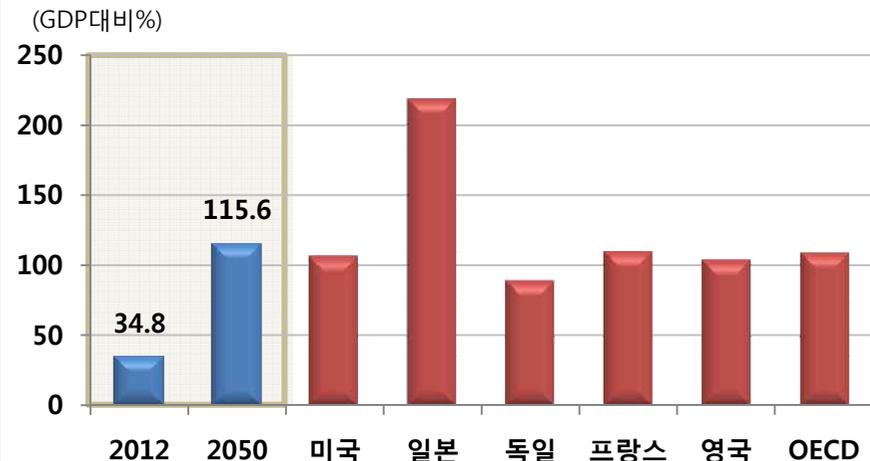
- ❖ 급증하는 사회보험료 부담(증가율: 과거 10년 간 연평균 10%)
  - 사회보험료(5종) : 89조(2013), 명목경제성장을 5.8% 보다 4.1%p 높음
- ❖ 고령화 및 성장동력 약화로 복지재정 악화 심화
  - 사회복지지출 규모 : 장기적으로 GDP 대비 20% 상회 (주요 선진국의 현재 수준)
  - 국가부채 규모 :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상회하여 재정 건전성 상실 우려
- ▶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협력 방안 필요

### GDP대비 사회복지지출



주: OECD 국가 2009년 기준.  
 자료: 박형수 외(2009),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, 보건복지부(2013),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

### GDP대비 국가채무



주: OECD 국가 2012년 기준  
 자료: 박형수 외(2009),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, OECD Economic Outlook No.92('13.5월), 기획재정부

# I. 우리의 복지현황 (선진국 경험 고려)



## ❖ 선진국의 복지개혁 경험을 참고할 필요

- 선진국의 80년대 복지지출 규모(16.9%) 는 우리나라 2026년 (초고령사회 진입)과 유사
  - \* 복지부 : 2013년 9.8% → 2030년 17.9% (연평균 0.48%p 증가)
- 복지개혁시 사적부문의 참여확대 유도(민영화, 리스터연금 도입 등)

▶ 고령화 속도, 복지지출 증가율 고려 시 현시점부터 복지개혁 추진 필요  
: 논의 집중 위해 건강 및 소득보장 중심으로 전개

### 연금 및 건강보장 개혁사례

- **공사적 연금 개혁 사례**
  - 공적 축소: 독일, 일본
  - 사적 주도: 스웨덴(NDC), 칠레(민영화)
- **건강보장 개혁사례**
  - 영국(NHS 축소): 2014년까지 200억 파운드 (약 34조원) 절감 계획
  - 일본: 공적 건강보장축소 추세

### 주요국 1980년대 복지지출 비중 (%)

구분	1980년대	
	평균	연평균증가율
스웨덴	28.65	0.86
독일	22.53	-0.1
영국	18.37	0.26
일본	11.23	0.75
OECD 평균	16.90	1.12

자료: 원종욱·이주하·김태은(2012),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



# 건강 보장 분야



## II. 건강 보장 분야 (공사 건강보장 체계)



## II. 건강 보장 분야 (건강보험의 성과)

### ❖ 단기간의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은 저부담, 저급여, 저수가에 기초

- 급속한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 (현재 독일, 프랑스의 절반 이하)
- 낮은 보험료 부담을 위해 의료수가 및 의료급여 수준을 낮게 책정

### ▶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과제

- 건강보험 재정수지,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대처 필요

###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('77년→'89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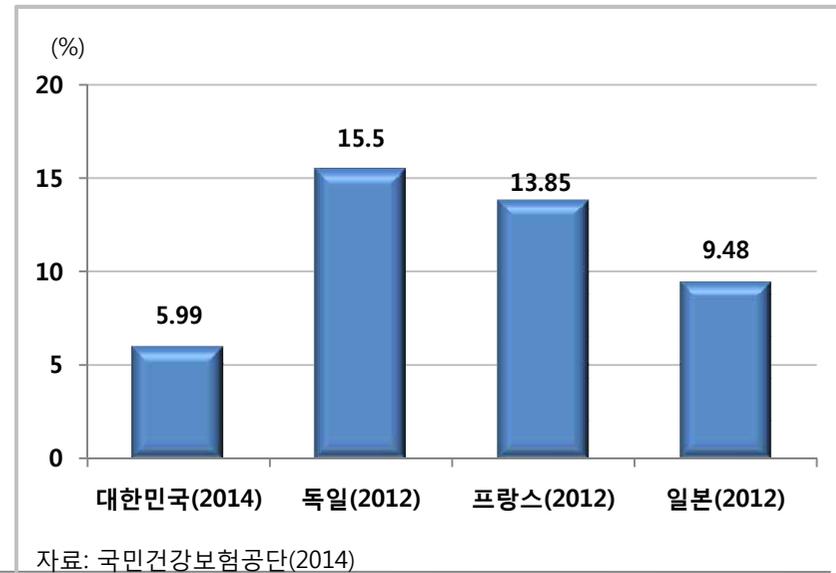
독일 127년, 벨기에 118년, 오스트리아 79년, 일본 36

저부담  
저렴한  
보험료 부과

저급여  
낮은  
보장 수준

저수가  
강한  
수가 통제

### 건강보험료를 국제비교



## Ⅱ. 건강 보장 분야 (건강보험 재정수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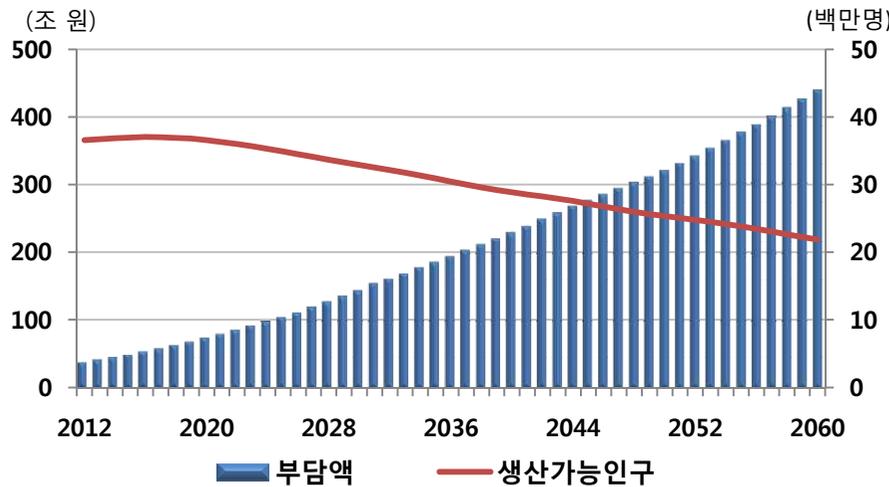
### ❖ 고령화로 건강보험료 부과 여건 악화 및 부담증가

-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,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악화
- 생산가능인구 당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부담은 2060년 8배까지 증가 예상

### ❖ 현 수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유지하더라도 심각한 적자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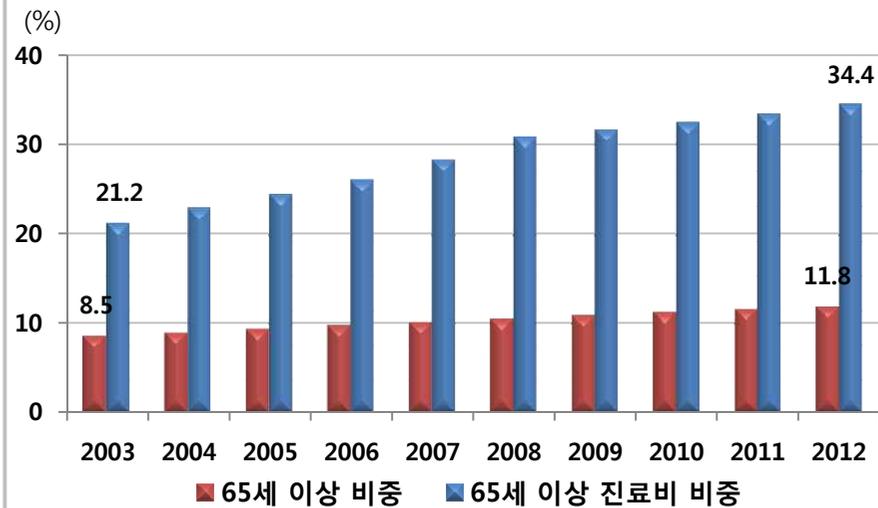
- 고령화 속도보다 빠른 진료비 증가: 노인인구(11.8%)가 1/3 이상의 진료비(34.4%) 지출

#### 국민건강보험 지출 추계



주: 실질가치 산출을 위한 소비자물가지수는 국회예산처(2012) 인용

#### 고령화와 진료비 추이



자료: 보건복지부,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

## II. 건강 보장 분야 (국민건강보험 자원확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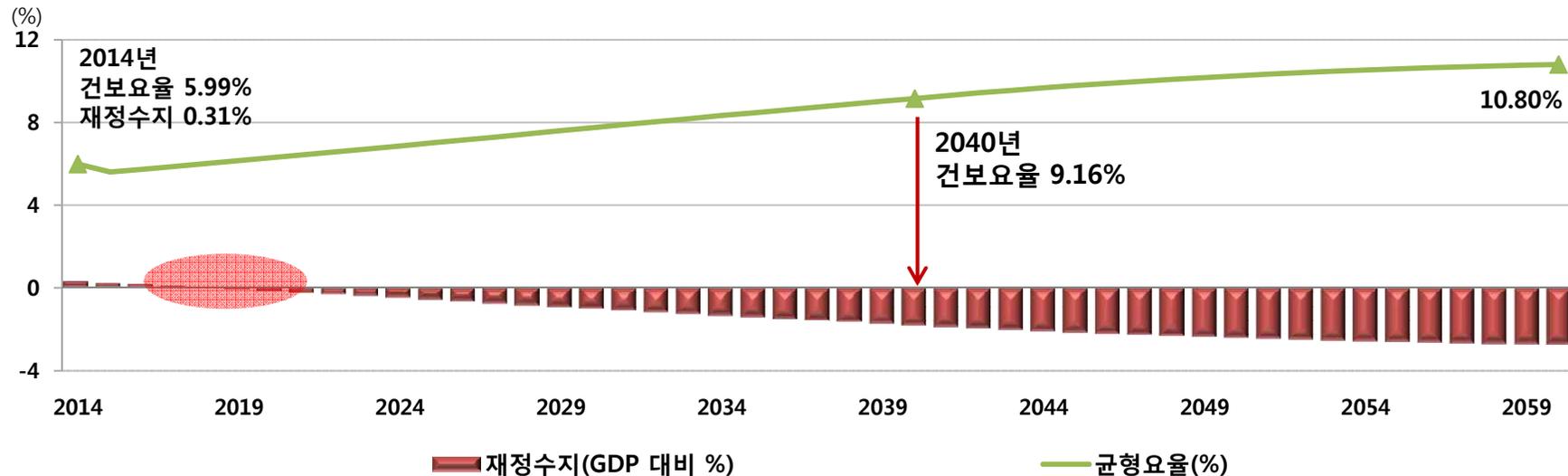
### ❖ 건강보험료 효율인상 및 부과기반 확대 (재정수지 균형 관리)

#### ▶ **효율인상** : 재정균형 위해 매년 0.14%p 인상 필요(2040년까지)

- 2040년까지 약 9% (9.16%, 수지균형수준) 수준에 도달 후 인상 수준 둔화

#### ▶ **납부자 저변 확대** : 소득기반 보험료 징수, 부양의무자 개선

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와 균형효율 추정



자료: 이태열 외 (2014)

## II. 건강 보장 분야 (의료비 지출 관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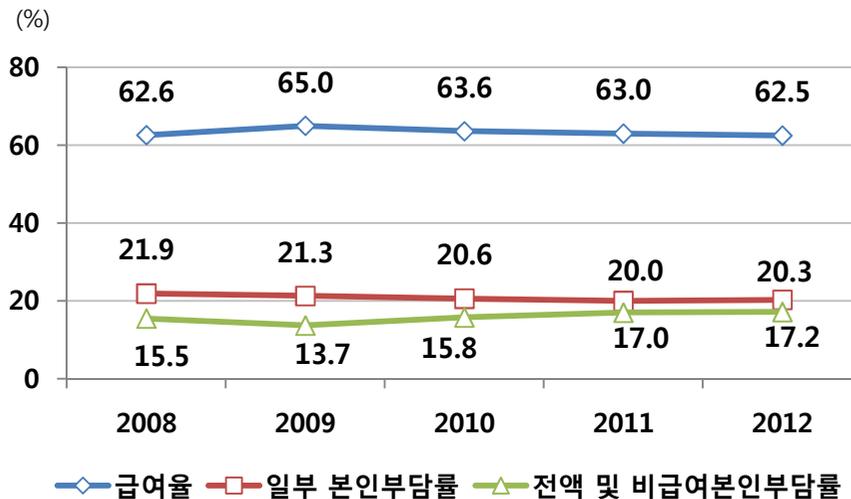
### ▶ 비급여 관리 강화

- 비급여 본인부담분의 지속 증가 (15.5%(2008년) → 17.2%(2012년))
- **비급여 표준화 및 제3자 보험금 청구제 추진 필요**

### ▶ 질병예방 및 의료비정보 공유

- **건강관리서비스 확대** 등으로 의료비 사전 절감
- 원활한 의료비정보 제공에 의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차단 (**의료비정보 서비스**)

###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비 추이



자료: 서남규 외(2013), 조용운(2014)

### 해외의 건강관리서비스 사례

- **보험사의 질병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참여**
- 공적부문: 프로그램개발 · 보급, 사적부문: 서비스 제공(일본, 2005년부터)
- 미국 Aetna사 건강관리서비스로 의료비 연 15% 절감
- 독일, 스페인: 24시간 의료상담 콜센터 (응급환자 이송 지원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감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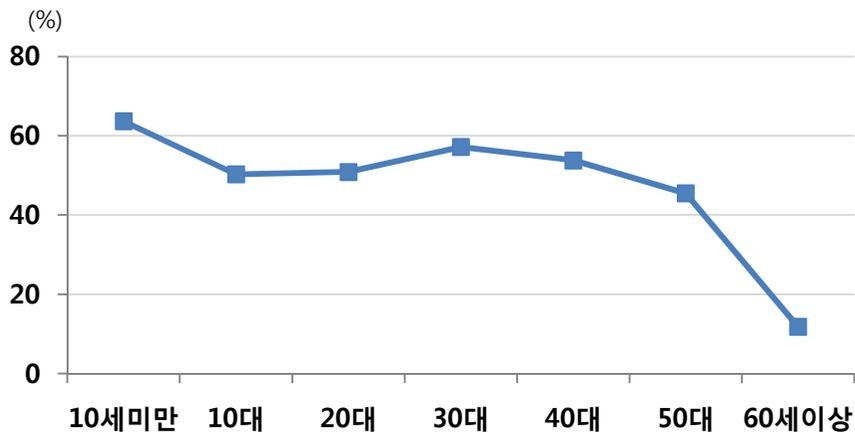
## II. 건강 보장 분야 (추가 검토 사항)

### ▶ 노후의료비보장보험 활성화

- 건강보험 기능을 보완하는 **(노후)실손의료보험의 확대 필요** [질병통계지원]
- 고령층의 낮은 가입률(유지율)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마련 **(노후의료저축보험 활성화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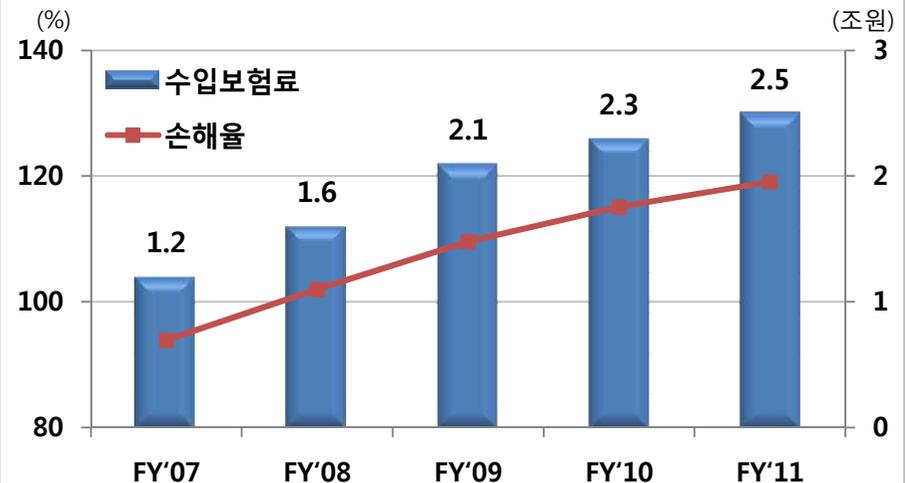
### ▶ 고령층 등 취약계층 **전용 판매채널** 구축

#### 실손 의료보험 가입률



주: 생명보험은 '10.12월 말, 손해보험은 '11.3월 말 기준임.  
 자료: 보험개발원 보도자료(2011. 12. 28).

#### 실손의료 수입보험료 및 손해율(손해보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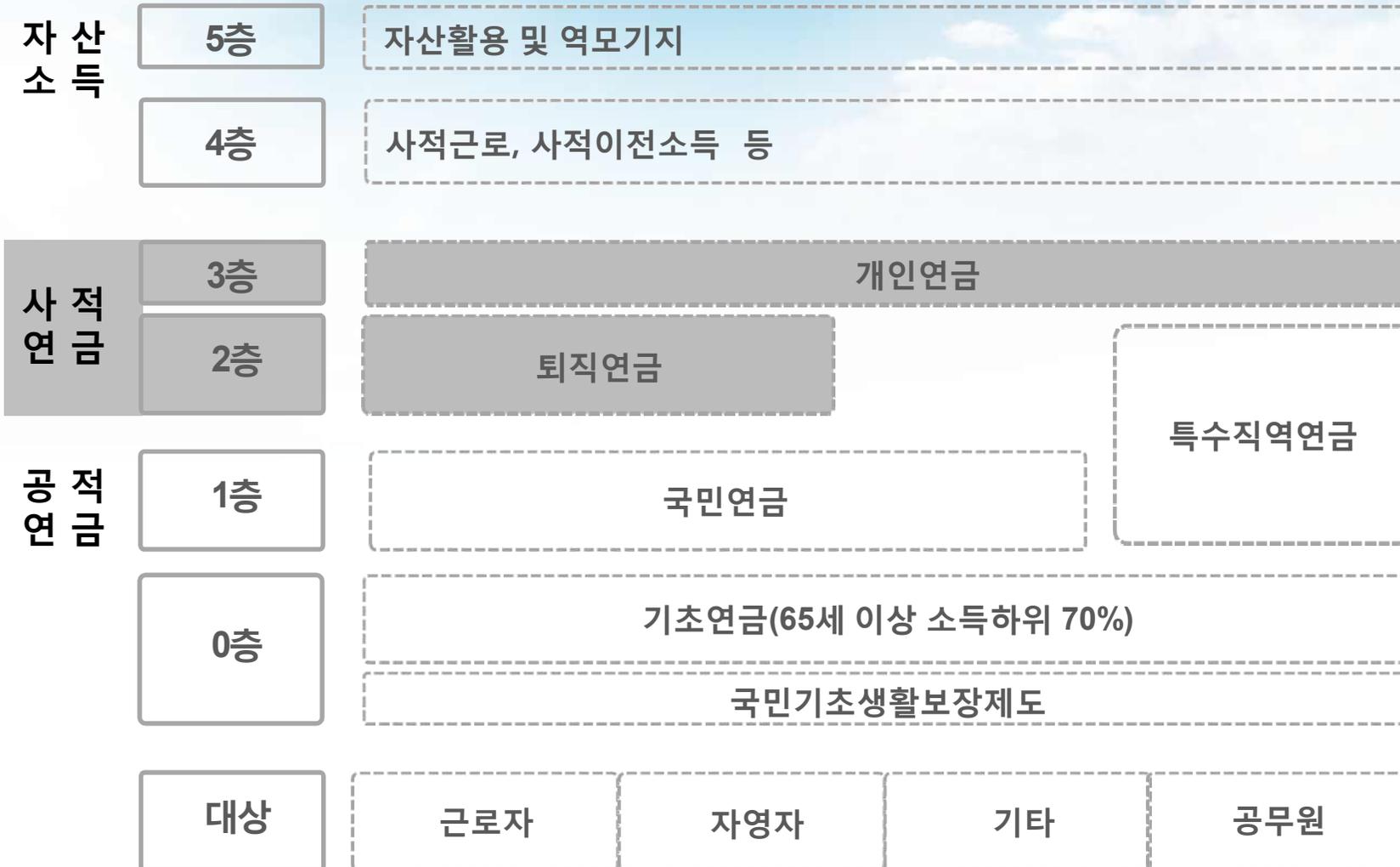
주: 손해율=지급보험금(실제)/위험보장보험료(예정)  
 자료: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,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12.8.30)



## 노후 소득 분야



# Ⅲ. 노후 소득 분야 (공사 노후소득보장 체계)



주: 1) ( ) 안은 가입자 수(단, 개인연금은 연금저축, 연금보험을 합산한 건수)

2) \* 특수지역연금은 공무원, 사학, 군인, 별정우체국연금으로 구성되며, 군인은 '11년 기준으로 산출되어 합산됨

자료: 보험연구원 내부자료(2013); 강성호·이지은(2010)

# Ⅲ. 노후 소득 분야 (국민연금 개혁 2007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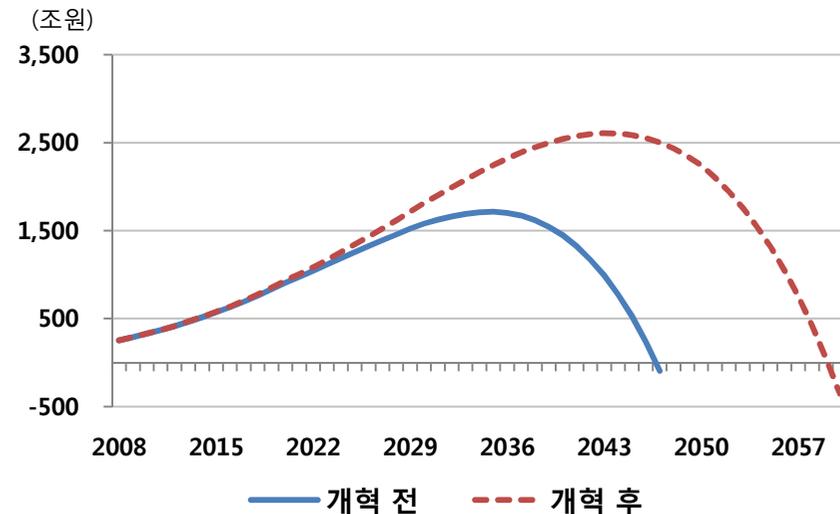
## ❖ 재정안정화를 위한 2007년 국민연금 개혁

- 소득대체율 대폭 인하 (60% → 40%), 수급개시연령 단계적 연기 (60세 → 65세)
- ▶ 기금 고갈 시기 연기에 불과: 2047년에서 2060년으로
  - 2060년까지 연기금은 베이비부머에 대한 노후소득으로 대부분 소진 (이후에도 재정문제 상존)
- ▶ 더 심각해진 노후소득보장 문제
  - 재정안정 중심 개혁으로 본질적 제도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문제 심각

### 수급개시연령

출생연도 (시행시기)	연령
~1952 (~2012)	60
1953~1956 (2013~)	61
1957~1960 (2018~)	62
1961~1964 (2023~)	63
1956~1968 (2028~)	64
1969~ (2033~)	65

### 2007년 개혁 전후 기금비교



자료: 국민연금 내부자료

### Ⅲ. 노후 소득 분야 (국민연금 개선 방향)



#### ❖ 낮은 보험료와 수지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안

-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보험료율(9%)에 대한 점진적 현실화가 불가피
- 수익비(급여액/기여액)는 평균가입자 기준 약 2배 내외

#### ▶ 미래세대의 부담이 일시에 급증하지 않게 **점진적 요율 인상** 필요

-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태에 있으므로 재정안정 방향은 보험료율 인상 측면에서 접근
- 수급연령 연장은 노동시장여건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[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추진, 정년과 수급시점 연계]

#### 국가별 공적연금 보험료율

국가	보험료율 (2012)
미국	12.4%
독일	19.6%
스웨덴	18.4%
일본 (후생연금)	15.4%
캐나다	9.9%
OECD 34개국 평균	19.6%
<b>한국</b>	<b>9.0%</b>

자료: OECD, Pensions at a Glance(2013)

#### 가입기간 및 소득수준별 수익비

가입기간	소득수준(2012년 기준)		
	100만원	188만원	375만원
10년	2.7	1.9	1.4
20년	2.7	1.8	1.4
30년	2.7	1.9	1.4
40년	2.8	2.0	1.5

주: 1) 평균소득 188만원은 '11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임.  
 2) 2012년 신규가입자 대상  
 3) 수익비 = 총급여액/총보험료납입액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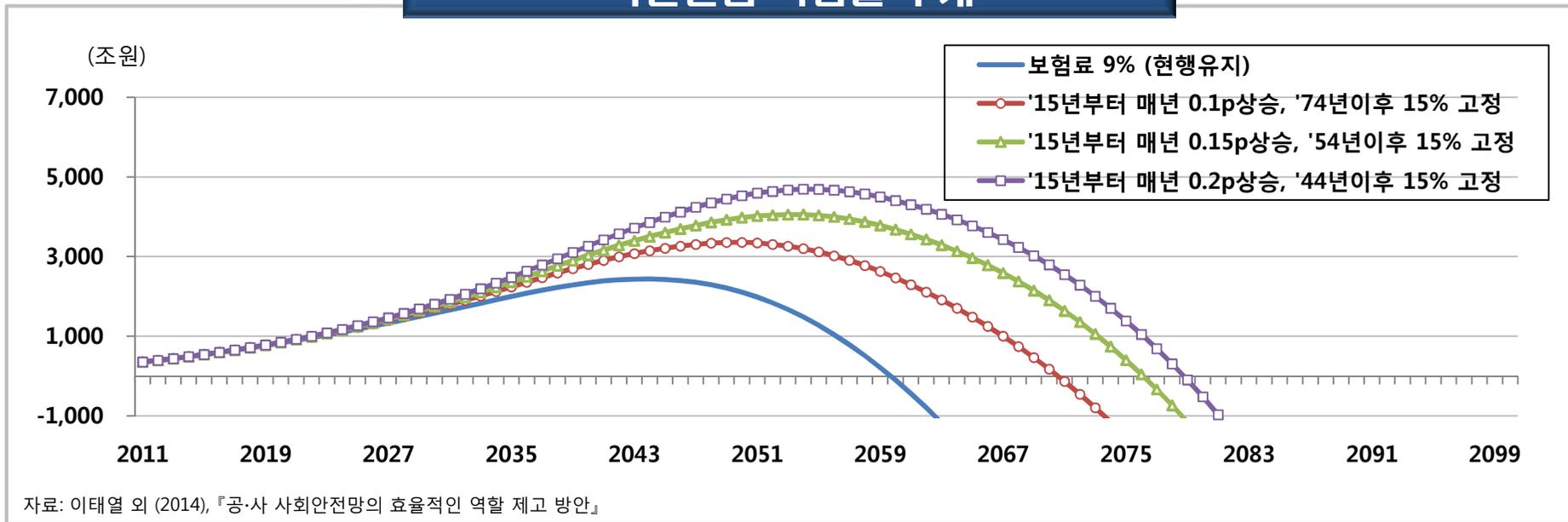
자료: 보건복지부, 2012

### Ⅲ. 노후 소득 분야 (국민연금 요율인상 시나리오)

#### ❖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 (보험연구원, 2014)

- **보험료율 15%**로 도달하는 시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(부담 분산)
- 고갈시점(연간증가율 가정): 2070년(0.1%p), 2075년(0.15%p), 2078년(0.2%p)
- 이후 후세대의 근로여건, 출산율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개혁

#### 국민연금 적립을 추계



### Ⅲ. 노후 소득 분야 (소득계층별 노후소득과 사적연금)

#### ❖ 선진국에 비해 총소득대체율이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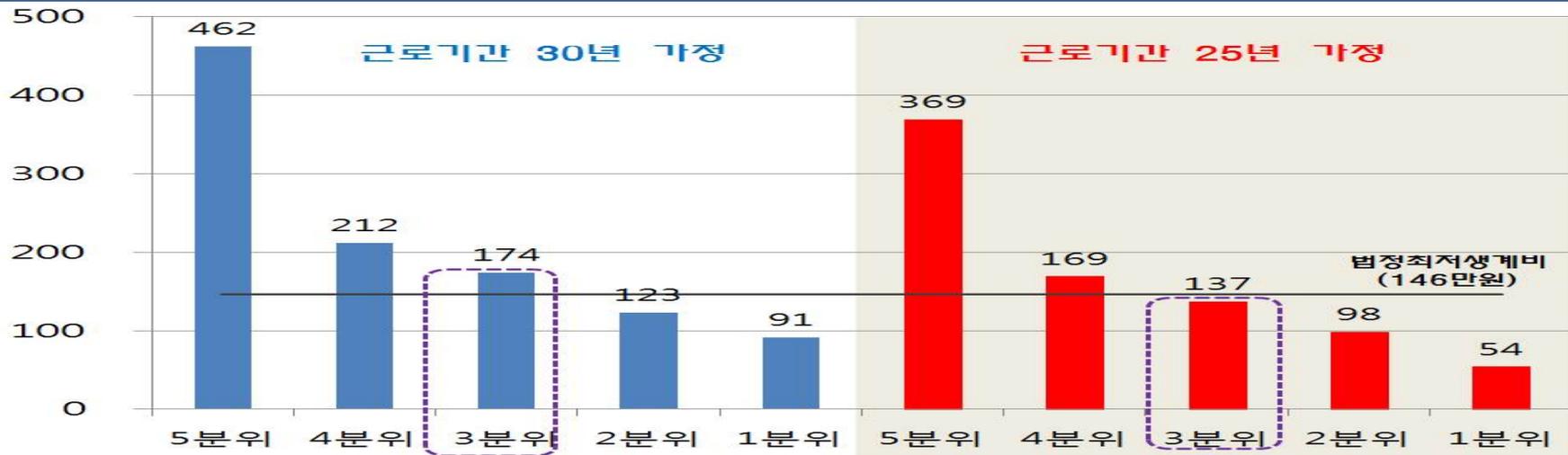
- 평균소득자: OECD 평균 70% (OECD 추정 모형), 우리나라 50% 내외

#### ❖ 소득계층별 노후소득 수준은 상당한 차이 : **중위소득** 이하 노령층의 **위험**

- 소득계층별로 공사 연금 및 자산 축적이 충실하게 이루어 질 경우를 가정 (30년 근로)
- 법원기준 최저생계비 : 1, 2분위 미달 (25년 근로시 3분위도 미달)

#### ▶ 중소득층 이하 사적연금 가입 강화 필요

소득계층별 노후소득 추정



주: 총소득=국민연금+퇴직연금+기초연금+순자산액  
 자료: 이태열 외 (2014), 『공·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』

### Ⅲ. 노후 소득 분야 (중소득층)

#### ❖ 중소기업 : 사적연금 가입유도로 사회안전망 강화

- 퇴직연금 가입의무화 대책의 실효성 제고 (기업부담 경감책 마련 등)
  - \* 예: 현행 퇴직금의 연금전환시 운전자금에 대한 부담이 큼.
- **세액공제를 확대** 검토 (과세소득자에 대한 소득보장강화)
-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검토 (예: 영, 미 등)

####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국가 (13개국)

구분	국가
오세아니아 (2개국)	호주, 뉴질랜드
유럽 (10개국)	덴마크, 헝가리, 아이슬란드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슬로바키아, 스웨덴, 스위스, (영국)
미주 (1개국)	멕시코

주: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임.  
 자료: 류건식(2013)

#### 연금지급 보장장치 현황

구분	보장범위	적용대상	특징
퇴직급여 우선변제 제도	최근3년 분에 한정	퇴직급여 대상	사업주 재산이 있을 시 지급
임금채권 보장기금 제도	최근 3년분, 상한액 설정	임금·휴업수당 및 퇴직금	지급보증제도 일부 기능
예금자 보호제도	별도 5,000만원	DC형/IRP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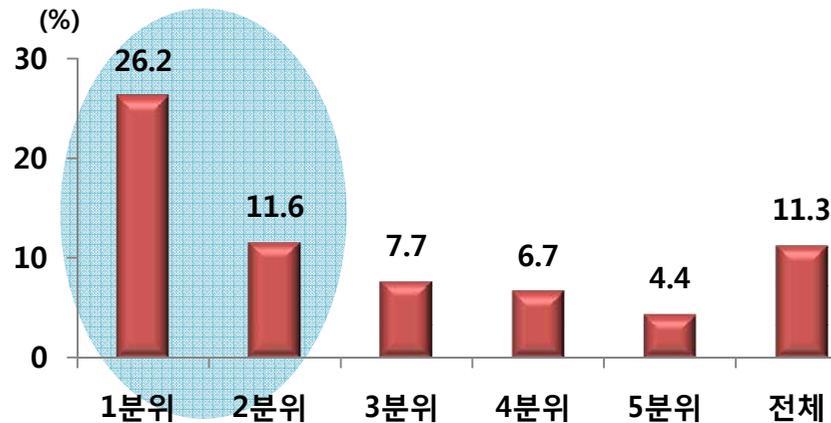
자료: 류건식(2013)

### Ⅲ. 노후 소득 분야 (저소득층)

#### ❖ 저소득층 : 사적연금 가입지원으로 연금사각지대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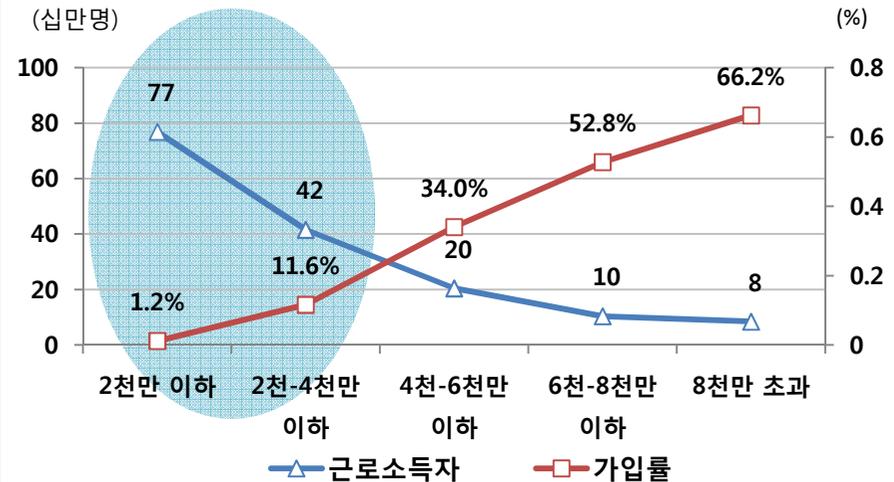
-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 가입지원
- 공적연금 사각지대 (1차) : 공적연금 미가입자 1분위 26.2%, 2분위 11.6%
- 사적연금 가입지원 (2차) : 두루누리 사업에 상응하는 퇴직연금 가입지원, 독일 리스트어 연금과 같은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(공적연금 가입 전제)

소득계층별 공적연금 미가입률(2011)



주: 1) 분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(가처분소득+자산환산액)을 기준으로 구분  
 2) ()안은 가로 비율임.  
 3) 빈도는 표본가중치를 활용한 표본가중 빈도임  
 자료: 한국복지패널조사(7차조사, 2011년 기준) 원시자료 분석

소득계층별 개인연금 가입률(20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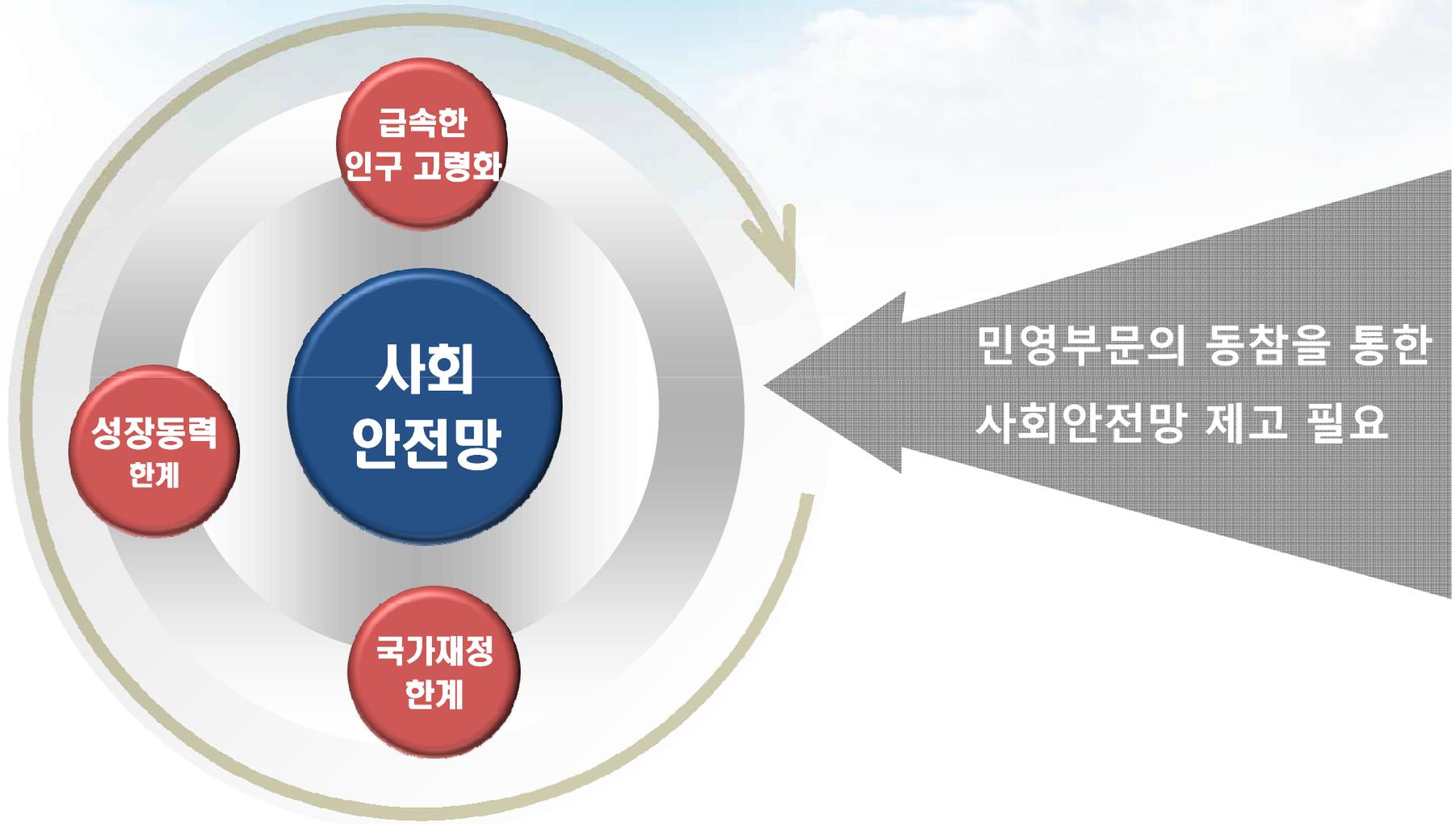


주: 가입률은 원천징수 실적 기준으로 적격 개인연금(연금저축, 2001년 이후 판매)을 대상으로 산출한 값임.  
 자료: 국세청(2013), 국세통계연보

# IV 결론



## IV. 결 론 (정리: 공사파트너 추진 필요성)



## 총 의료비 관리

- 비급여부문 의료비 관리와 취약계층 보장서비스 제공 -

구 분	내 용
의료비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비급여 관리 강화 (제3차 보험금 청구제, 비급여코드 표준화)</li> <li>▪ 질병예방 (건강관리서비스)</li> <li>▪ 의료비정보 제공 (의료비정보 서비스)</li> </ul>

고령층(취약계층) 공급확대 : 노후의료비보장보험 활성화, 전용판매채널 구축

## [공적부문 요구] 건강보험 재정안정화

- 건보료를 인상, 납부저변 확대 (소득기반, 피부양 조건 개선) -

##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확보

-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접근 필요 -

구 분	내 용
중소득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퇴직연금 가입 의무의 실효성 제고(기업부담 경감책 고려)</li> <li>▪ 세액공제율 확대</li> <li>▪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검토</li> </ul>
저소득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개인연금 보조금 지급 검토 (공적연금 가입 전제)</li> <li>▪ 두루누리 사업에 상응하는 퇴직급여 보조금 적용</li> </ul>

## [공적부문 요구] 공적연금 재정강화 및 형평성

-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, 기초연금 조기정착,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kiri



kiri 보험연구원